##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357 발의연월일: 2021. 11. 17.

발 의 자:남인순·강선우·김홍걸

변재일 • 양경숙 • 양정숙

양향자 • 이용빈 • 이형석

인재근 · 정성호 · 정춘숙

최종윤 · 최혜영 · 허종식

홍성국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등 처분에 대해 약제의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 등이 이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최근 4년간 39건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또한,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제조업자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대부분 인용됨에 따라 심판 또는 소송 기간 동안 약가인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향후 본안 심판 또는 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제조업자 등은 소송 기간동안 처분의 미집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반면 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손실은 수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가중되

고 있음.

이에 약가 인하, 요양급여 중지·제외 등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방지하는 한편, 약제의 제조업자 등이 위법한 처 분에 따라 입게 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 본안소송에서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조업자 등으 로부터 손실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정지가 결정되지 않 아 처분이 이미 집행되었으나 이후 본안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다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제조업자 등이 입은 손실상당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제81조제1항, 제101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의 제목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및 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을 "자(이하 "약제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제5항) 중 "사항과"를 "사항,"으로, "방법 등"을 "방법, 제5항에 따른직권 조정 사유, 절차 및 방법 등"으로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하여 고시한 약제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 범위,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등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81조제1항 전단 중 "제78조의2 및 제101조"를 "제78조의2, 제101조 및 제101조의2"로 한다.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 ① 공단은 제41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41조의3에 따른 조정(이하 이 조에서는 "조정등"이라 한다)에 대해 약제의 제조업자등이 제기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재결, 판결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정등이 집행정지된 기간 동안 공단에게 발생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약제의 제조업자등에게서 징수할 수 있다.

- 1.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이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
- 2.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일부 기각을 포함 한다)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취하(행정심판의 경우 청구 취하) 종결된 경우
- ② 공단은 제1항의 심판 또는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재결, 판결이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정등으로 인해 약제의 제조업자등에게 발생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 1.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거나 집행정지 결정이 취소된 경우
- 2.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인용(일부 인용을 포함한다)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집행정지 기간 동안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과 집행정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공단이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차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는 내용의 조정등의경우에는 요양급여 비용 차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제2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조정등이 없었다면 공단이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과 조정등에 따라 이후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차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는 내용의 조정등의 경우에는 요양급여 비용 차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또는 징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징수절차, 제2항에 따른 지급절차,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기준 및 기간, 제5항 에 따른 가산금 등 징수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01
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의3 <u>(행위·치료재료 및 약</u>	제41조의3 <u>(행위·치료재료 및 약</u>
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u>의 결정)</u> ① (생 략)	의 결정 및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약사법」에 따른 약제의	②
제조업자・수입업자 등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u>자는</u> 요양	<u>자(이하 "약</u>
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이하	
이 조에서 "약제"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	
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	
청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제
	2항제2호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으로 결정하여 고시한 약제에
	대해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
	범위,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등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
	<u>다.</u>
$\underline{\mathbb{5}}$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요	<u>⑥</u>
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신청	

의 시기, 절차, 방법 및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u>사항과</u> 제3 항과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대 상 여부의 결정 절차 및 <u>방법</u>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 처분) ① 공단은 제57조, 제77 조, 제77조의2, <u>제78조의2 및</u> <u>제101조</u>에 따라 보험료등을 내지 야 하는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가입 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 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 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 ⑥ (생 략) <신 설>

<u>사항,</u>
<u>방법, 제5</u>
항에 따른 직권 조정 사유, 절
<u>차 및 방법 등</u>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
처분) ①
제78조의2, 제101
조 및 제101조의2
② ~ ⑥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1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
 ① 공단은 제41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41조의3에 따른 조정(이하 이 조에서는 "조정등"이라 한 다)에 대해 약제의 제조업자등 이 제기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 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에 대 한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 의 결정이나 재결, 판결이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에는 조정등이 집행 정지된 기간 동안 공단에게 발 생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약제의 제조업자등에게서 징수 할 수 있다.

- 1.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이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
- 2.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일부 기
   각을 포함한다)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취하(행정심판의 경우 청구취하) 종결된 경우
- ② 공단은 제1항의 심판 또는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재결, 판결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정 등으로 인해 약제의 제조업자 등에게 발생한 손실에 상당하 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 1.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
   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거나
   집행정지 결정이 취소된 경
   오
- 2.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인용(일부 인용을 포함
   한다)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
   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집행정지 기간 동안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과 집행정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공단이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차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요양급여의 적용을정지하는 내용의 조정등의 경우에는 요양급여 비용 차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금액은 해당 조정등이 없 었다면 공단이 지급해야 할 요 양급여비용과 조정등에 따라 이후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비용의 차액으로 산정한다. 다 만,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 거나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 하는 내용의 조정등의 경우에 는 요양급여 비용 차액의 100 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또는 징수하는 경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징수절차, 제2항에 따른 지급절차,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기준 및 기간, 제5항에 따른 가산금 등 징수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